

漁業勞使關係의 本質的 理解에 관한 考察

孔 龍 植*

Intrinsic Comprehens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Fisheries

RYONG-SIK KHONG

목 차

- | | |
|------------------------|------------------------------|
| I. 序 論 | III. 漁業勞使關係에 있어서 社會的 關係의 特殊性 |
| II. 勞使關係의 本質的 性格과 漁業勞動 | IV. 漁業勞使關係에 있어서의 規範性 |
| (1) 勞使關係의 本質的 性格 | V. 結 論 |
| (2) 漁業勞動과 人間疎外 | |

I. 序 論

漁業勞使關係를 水産業 特別히 漁業에 있어서의 勞使關係라 定義할 때 이에 대한 論議는 漁業과의 關聯에서 그 勞使關係에 의해 무엇이 特別한 考察의 對象인가가 우선 規定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勞使關係의 本質的 意義 그 自體에는 어느 産業을 莫論하고 差異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勞使關係一般이 企業에 따라 所有者的 立場에서 理解되는 經營者 내지 使用者와 賃勞動의 提供者인 勞動者 사이의 利害關係의 相異, 그리고 組織의 次元에선 兩者가 企業所有者的 立場과 賃勞動提供者의 立場에서 各其 그 質을 같이 하나 한편 持續적으로 그리고 主導的으로 構成되는 組織의 目的異質性을 基礎로 兩者間的 社會的 關係에서 一般的으로 把握되는 社會現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把握되는 勞使關係의 一般性은 具體的으로 企業活動에 展開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勞動의 定性的 差로 인하여 産業次元에서의 産業別勞動의 差가 規定됨에 이로 인하여 勞使關係의 産業別特殊現象이 把握되게 마련이다. 여기에 漁業勞使關係도 勞使關係一般과 本質적으로 그 基本的 性格을 같이 하나 漁業勞動이 展開되는 技術的 過程과 社會經濟的 過程에서 漁業勞動의 特殊性과의 關聯에서 他産業과 比較할 때 特異한 勞使關係로 知覺되게 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이 特異하게 知覺될 漁業勞使關係가 具體的으로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가를 勞使關係一般과의 關係에서 檢討하고, 그리고 勞使關係가 企業 내지 經營維持의 한 重要要件이라 할 때 漁業勞使關係는 漁業經營의 維持를 위해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規範的 觀點에서 그

*釜山水產大學 教授

問題點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漁業勞使關係는 考察 對象으로 「漁業」의 이름에 의해 包攝될 수 있는 모든 漁業經營이 網羅되어야 할 것이나, 漁業經營은 零細規模에서 大規模經營에 이르기 까지 規模에 있어서 多樣할 뿐 아니라, 漁撈手段에 있어서도 맨손 또는 簡單한 採集器를 利用한 原始的 採取漁業에서 부터 大規模의 漁網 또는 機械化된 漁撈機器를 利用한 機械化漁業에 이르기 까지 多樣하며, 또한 勞使關係 그 自體의 存在마저 否認될 漁業經營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漁獲 및 經營實績에 關係 없이 固定賃金制度를 採用함으로써 漁業勞使關係의 特殊性이 考察의 對象으로서 그 對象성이 相當히 輕減될 漁業經營이 있기 때문에 漁業勞使關係의 考察對象規定에는 相當한 困難이 따른다. 그러나 勞使關係가 資本主義經營에서 發生되는 現象이라는 事實에서 漁業勞使關係의 考察對象으로 規定될 漁業經營은 資本漁業(capitalistic fisheries)이어야 하고, 또한 漁業 特히 漁業勞動의 特殊性이 觀察되고 이 兩者의 關係가 保存되고 있는 漁業으로서 漁業을 代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漁業經營의 資本制的 性格인 勞使關係의 本質性, 漁業勞使關係의 特殊性, 그리고 考察對象의 代表性이란 三側面에서 이러한 諸條件을 滿足시킬 수 있는 漁業으로서 大型機船底引網漁業과 大型旋網漁業을 考察의 우선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이나 大型旋網漁業은 漁船隻當規模가 100톤 內外이며 操業單位인 統當從事者數는 쌍끌이大型機船底引網漁業 26名, 외끌이 大型機船底引網漁業 12名 그리고 大型旋網漁業 96名으로(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1982-에서 引用) 資本規模와 從業員規模에 있어서 漁業經營과 家計가 未分離인 漁家經營規模에서의 調達限界를 넘어 企業가가 「生産手段(漁船 漁具 등)을 所有·調達하고 船員을 雇傭·調達함으로써 生産活動이 이루어지고 經營內에 利害關係와 目的意識을 달리는 異質的인 두 集團의 存在가 認定되는 資本制的 經營으로서 資本制的 勞使關係의 成立을 보여주고 있다. 漁業勞使關係의 特殊性은 勞使關係의 基本인 漁業經營의 特殊性에 緣由하는 것인 만큼 近海漁業經營이 特殊性에서 漁業勞使關係의 特殊性을 理解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漁業經營의 特殊性에 대한 論議에 있어서도 漁業一般이 그 對象이 될 수 있으나, 漁業을 狹義로 定義할 때 水産資源의 採捕産業을 指稱할 수 있고 最狹義로는 漁船漁業이 該當된다. 그리고 海域을 基準으로 할 때 遠洋, 近海, 沿岸漁業으로 區分하나 遠洋漁業은 漁撈根據地인 沿岸國의 近海 내지 沿岸漁業에 歸屬되기 때문 近海와 沿岸漁業에서 漁業經營의 特殊性을 把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沿岸漁業은 陸岸近處에서 이루어 지고 漁船漁業의 最大特徵인 自然條件에 의한 漁船運營의 危險성과 漁獲成果의 投機性은 沿岸漁業 보다는 近海漁業에서 보다 特徵的으로 把握된다. <표-1>에서 보면 近海漁業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는 水産廳長許可漁業은 年間出漁回數 39회에 出漁當出漁日數 4.3日인데 대하여 沿岸漁業은 年間出漁回數 116회에 出漁當出漁日數는 1.2日이다. 이는 沿岸漁業은 大개 當日歸港漁撈作業인데 대하여 近海漁業은 이보다 3倍以上의 긴 出漁當海上滯留期間을 통하여 그 만큼 自然條件에 直面되는 期間이 길어진다. 그리고 沿岸漁業이 出漁日數와 漁撈日數가 같음으로써 出漁活動이 곧 漁撈活動과 連結되는데 대하여 水産廳長許可漁業은 出漁當出漁日數 4.3일에 漁撈日數 3.3日이라는 事實에서 出漁活動이 漁撈活動에 곧 連結되지 않으며 그리고 漁撈對象에 의한 漁撈活動의 規制와 더불어 漁業勞動의 斷續성과 間歇性的 機會를 增大케 한다. 이는 生産活

漁業勞使關係의 本質的 理解에 관한 考察

動的 間歇性을 뜻하는 것으로 經營活動의 間歇性을 誘發시키는 契機이다. 그리고 漁撈日當漁獲量을 보면 水産廳長許可漁業이 1,542kg인데 대하여 沿岸漁業은 80kg으로 19.3 : 1의 比이다. 이러한 漁獲成果의 差는 漁船規模의 差에서 오는 大規模漁業의 有利性(隻當噸數는 水産廳長許可漁業이 54.61G/T이고 沿岸漁業이 5.46G/T으로 그 比는 10 : 1이다)에 基因하는 바도 있겠으나 兩漁業間의 漁獲成果의 差는 漁船規模의 差의 約2倍로 經營活動의 間歇性和 더불어 漁獲成果의 投機性에 의한 機會發生可能性이 그 만큼 增大한데 基因하는 것이라 理解된다. 이러한 一連의 事實에서 自然條件에 의한 漁船運營의 困難性和 漁撈成果의 投機性이 近海漁業에서 보다 顯著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表-1> 業種別 經營體當 操業活動(1982)

區分業種	出漁回數	出漁日數	出漁回當出漁日數	漁撈日數	出漁回當漁撈日數	漁獲量(kg)	漁撈日當漁獲量(kg)
水産廳長許可漁業	39	166	4.3	129	3.3	198,914	1,542
沿岸漁業	116	137	1.2	137	1.2	10,960	80

資料 : 어업경영조사보고 1982년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考察對象의 代表性에 대해 보면 水産廳의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1987)에서 指稱한 近海漁業인 大型機船底引網漁業, 中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旋網漁業, 東海트롤漁業, 大型트롤漁業 그리고 近海채낚기漁業등의 經營體 1,851個業體(1986年), 漁獲量 835,041M/T(1986年) 가운데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280個業體에 漁獲量은 127,449M/T이다. <表-2>에 의해 그 代表性을 보면 經營體數가 가장 많은 近海채낚기漁業은 漁獲量(25,981M/T, 3.1%)과 經營體當漁獲量(20 M/T)이 他近海漁業에 비해 그 隔差가 甚할 뿐 아니라 이 經營體當漁獲量은 他近海漁業經營體의 20 분지1에도 未達되고 沿岸漁業의 漁業經營體當漁獲量(58M/T, 1986年)보다 적어 그 漁業成果規模의 矮小性으로 近海漁業의 代表性은 主張될 수 없다. 機船底引網漁業과 트롤漁業은 同類의 引網類漁業에 속하나 大型트롤漁業의 經營體當漁獲量은 他近海引網漁業經營體의 約3倍로 그 漁業成果에 큰 差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近海채낚기漁業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差는 아니다. 近海채낚기漁業은 除外했을 경우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漁業經營이 그 經營體數에 있어서 보다 普及되어 있고 또한 漁業體當漁獲量 역시 平均 水準이라는 事實에서 代表性이 主張될 수 있으리라 理解된다. 그리고 大型旋網漁業은 經營體數는 많지 않으나 操業單位인 「統」이 網船, 燈船 그리고 運搬船 등 6~7隻으로 船團을 構成하고 있어 最大의 近海漁業經營規模일 뿐 아니라 漁獲量과 經營體當漁獲量 다같이 業界를 代表하는 位置에 놓여 있어 그 代表性이 認定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經營體當漁獲量, 즉 漁業成果가 近海漁業의 平均值 내지 그 以上値를 記錄할 수 있는 業種에서 經營體數에 의한 普及程度가 높은 引網類漁業인 大型機船底引網漁業과 經營規模와 漁業成果에서 뛰어난 業種 가운데 引網數漁業과 業種을 달리 하는 唯一한 主要近海漁業으로서 大型旋網漁業으로 하여 近海漁業을 대표하는 業種으로 規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表-2> 主要近海漁業經營體數 및 漁獲量(1986)

區 分 業 種	經 營 體 數		漁 獲 量		經營體當 漁獲量(%)
	數	%	噸	%	
大型機船底引網漁業	280	15.1	127,449	15.3	455
中型機船旋網漁業	107	5.8	54,603	6.5	510
大型機船旋網漁業	48	2.6	458,785	54.9	9,558
東海 트롤漁業	43	2.3	24,556	3.0	571
大型 트롤漁業	90	4.9	143,667	17.2	1,596
近海 채낚이漁業	1,283	69.3	25,981	3.1	20
計	1,851		835,041		(平均)451

資料: 1. 水産廳, 1987年度 水産業의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2. 農林水産部, 農水産統計연보, 1987年

이상에서 大型機船底引網漁業과 大型旋網漁業으로 漁業勞使關係를 考察하는데 그 認識의 對象으로 그 適切性이 主張되리라 생각된다.

II. 勞使關係의 本質과 漁業勞動

(1) 勞使關係의 本質性

勞使關係는 資本主義經濟體制의 產物이다. 資本主義의 發達は 資本主義的 雇傭關係, 즉 生産手段의 所有者로서 生産關係에 參與하는 雇傭主와 勞動力의 所有者로서 勞動의 提供에 의해 生産關係에 參與하는 被雇傭者와의 사이에 雇傭關係를 媒介로 成立한 社會關係가 勞使關係로서 規定되나, 이러한 勞使關係는 勞動經濟學的 觀點에서 資本·賃金勞使關係로서의 「勞資關係」와, 産業化論的 觀點에서의 「勞使關係」의 두개의 흐름으로 大別할 수 있다. 前者에 있어서 資本의 展開過程에서 資本自身の 所有에 歸屬된 勞動力의 可能한 한의 利用에 의해 利潤을 產出하려는 G-W-G'의 運動과 賃金勞動(勞動者)自身の 生活의 維持改善을 위한 W-G-W의 運動 兩者間의 矛盾과 對立 가운데 이를 解決하려는 努力으로서 勞動組合의 組織과 社會政策의 發展을 볼 수 있고, 이 過程에서 勞動力과 勞動力의 所有者(勞動力의 生産者이며 販賣者)의 統一體로서 把握되는 勞動者의 意義가 矛盾의 解決者로서 더욱 重要視하게 된다는 一連의 關係가 原理적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 경우 賃金勞使關係의 矛盾을 純經濟的으로 理解하는 나머지 資本主義經濟體制의 主動力인 資本家의 行爲와 이에 對抗하는 勞動者의 行爲를 階級的 對抗關係에서 矛盾의 窮極的 解決, 즉 資本主義形成에 의해 나타난 生産手段으로 부터의 自由가 資本에의 隸屬을 結果하게 되고, 이로부터의 自由이고자 하는 勞動者의 自己實現論理를 이데올로기의 觀點에서 資本主義經濟體制의 變革에 求하게 된다. 이와 같이 純經濟的·賃勞動의 觀點에서 理解되는 勞使關係는 이데올로기의 나아가 政治的 關係로 變革을 꾀하게 되고 資本主義經濟體制 自體를 否定하기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主張은 資本運營過程과 賃勞動運營過程 사이에 나타난 矛盾의 解決에 의해 資本主義經濟體制의 維持·發展에 「勞使關係」의 存在意義를 規定하여야 할 本來的 意義의 喪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勞使關

「係」는 經濟的 關係보다는 資本運動過程의 行爲主體와 賃勞動運動過程의 行爲主體와의 利害關係의 統合에 의해 資本主義經濟體制의 維持·發展을 그리고 資本主義社會의 維持를 意圖하는 社會的 關係로서 定立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社會的 關係란 個別的인 多樣的 欲求體系를 가진 個人으로서 「資本家」와 「勞動者」가 「勞使關係」에서 組織的 對抗關係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關係의 基底에 있어서 私的 利益의 追求者로서의 社會的 行動에 의한 社會關係를 말한다.

古典經濟學의 그리고 階級的 對擴關係로서 理解되는 「勞資關係」의 發展은 紛爭處理라는 立場에서 볼 때 資本과 賃勞動과의 矛盾·紛爭을 「賃勞動」에 의한 「資本」支配(domination)라는 方法으로 關係를 處理하려는 立場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否定을 意味하여 「勝者의 絕對性」이라는 立場에서 社會關係의 本質인 相對性을 아울러 否認하기에 이르고 人間의 社會的 存在性 내지 實存까지 否定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서로의 利害關係를 合理的 調整(reasonable reconciliation)에 의해 處理하려는 統合(integration)과는 質的으로 相異한 處理方法이라 하겠으며 여기에 統合的 關係處理라는 觀點에서 「勞使關係」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緣由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組合」은 利害를 달리는 者間的 合理的 利害調整을 相對의 存在를 肯定하고 이를 出發點으로 相對와의 關係에서 自己存在를 確立하는 問題解決方法이다. 그리고 「勞使關係」(狹義)를 産業化過程에선 産業社會의 下位體系로 그 位相을 定立시키고 勞使關係制度의 行爲主體(actors)間에 展開되는 社會的 相互作用의 諸關係로서 規定하는 것을 그 本質로 하고 있다. 元來 勞使關係의 行爲主體는 經營者(組織)과 勞動者(組織)의 兩者였으나 이들 사이의 對經營內社會關係를 基盤으로 하면서 影響要因으로 浮刻된 對經營外對立關係로 인하여 二者間關係에서 指摘되었던 資本主義의 害惡을 人間平等思想, 博愛思想 내지 生存權思想을 根底로 하고 勞動基本權의 確立, 所得公正配分の 促進, 이로 인한 國民購買力의 增進등에 의한 資本主義經濟體制의 圓滑한 作動을 企圖하는 福祉國家觀의 出現이 政府로 하여금 勞使關係의 行爲主體로의 登場을 必然的으로 促進하기에 이르렀으며, 經營者(組織), 勞動者(組織) 그리고 政府의 三行爲主體間的 相互作用에 의한 勞使關係制度의 確立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關係가 어느 한 者들 否定하지 않고 相互利害의 合理的 調整에 의해 成立되는 것인 만큼 여기에 産業社會의 下位體系로서의 勞使關係를 規定하는 契機가 마련된다. 그리고 또한 「勞資」關係가 「勞使」關係로 把握되는 過程에서 「資本家」主體의 「經營者(組織)」主體로의 質的 轉換이 이루어 졌음도 볼 수 있다. 이것은 管理의 分化에 緣由하는 것으로 産業化의 進展은 企業의 規模擴大와 業務耐用의 複雜化에 의한 管理職能과 作業職能의 分化와 더불어 企業經營의 成立을 보는데 管理者層은 機能資本家 혹은 所謂 傳聞經營者 즉 「經營者」에 의해 代表되게 하고 從前 「資本家」階層에 의해 擔當되던 機能이 經營者層에 의해 擔當케 됨으로써 나타난 現象이다.

以上에서 勞使關係는 經營者(組織)과 勞動者(組織)의 兩者間關係를 基礎로 政府가 參與하고 行爲主體間的 利害의 合理的 調整을 企圖하고 이로 인하여 資本主義經濟體制의 圓滑한 作動을 企圖하는 産業社會의 下位體系로 理解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勞使關係는 또한 資本主義經濟體制의 維持機能의 擔當機關인 企業制度의 存續 없이 그 展開를 볼 수 없을 社會的 現象으로 企業次元에서

人事管理의 對象으로 具體化되고 展開된다. 人事管理는 本來 人力管理로서 勞動力의 最高能率의 利用을 위한 施策에 그 本質을 理解하여 왔으나, 勞動力의 所有者로서의 人間을 考慮함이 없이 進展되는 人力管理에 의한 人間疎外 내지 非人間化過程에서 再人間化의 要求로 勞動力의 所有者인 人間을 對象하는 人間管理가 企業制度維持에 必須的이며 必然的임을 理解하게 되고 勞動組合의 形成·發展과 더불어 勞使關係가 人事管理의 한 主要課題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言及한 利害의 合理的 調整도 人間管理의 展開過程의 次元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勞使關係는 經營이란 「生産의 場」에서 發生한 勞動의 疎外(勞動過程에 있어서 生産主體인 勞動者에 대한 否定的 現象 혹은 非人間化現象)에 緣由하는 것으로 人間管理關聯의 人事管理의 次元에서 다루어 질 것이나 産業社會의 下位體系인 點에서 勞使關係의 모든 行動主體에 대한 否定을 止揚하고 利害의 合理的 調整에 의해 資本主義經濟體制 내지 企業制度의 維持라는 規範性을 갖는 것으로 理解할 때 비로소 再人間化를 意圖하는 勞使關係의 本質도 規定되기에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 行爲主體에 대한 否定的 止揚은 歷史的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行爲主體에 대한 肯定뿐만 아니라 可能性으로서 혹은 潛在的인 것으로서의 어떤 行爲主體에 대한 否定도 止揚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觀點에서 勞使關係란 體制關聯的으로 把握되어야 當爲性이 主張되기에 이른다.

위와 같은 勞使關係의 本質的 理解를 前提로 할 때 人間疎外의 여하와 이에 대한 對處方法이 勞使關係의 樣相을 規定하고 또한 勞使關係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하는 方向을 規定하는 것임으로, 漁業勞使關係의 特殊性에 대한 考察도 그 脈絡을 여기에 求하고자 한다.

人間疎外의 形態에 대해 務台(Mudai)는 다음 다섯가지 形態를 提示되고 있다.

1. 人間勞動의 疎外(勞動과 勞動目標와의 乖離에 의한 人間關係의 喪失과 勞動의 기쁨이 喪失된 狀況)
2. 企業規模의 擴大에 의한 從前의 共同體的 組織의 解體에서 派生되는 疎外(共同體의 解體에 의한 大企業會社의 利己主義와 Commercialism, 階層間的 對立, 人間의 極端的 孤立 등의 對會的 狀況에 의해 利己主義가 深化된 狀況)
3. 巨大한 Mass-communication과 Mass-production에 의한 生活의 劃一化와 受動化에 의한 疎外(劃一化, 受動化에 의해 主體의 思考와 判斷이 不必要하게 되고 空疎한 觀念的 臆說(dogma)에 의한 思想的 行動등이 強化된 狀況)
4. 技術革新에 의한 疎外(技術革新에 의한 機械萬能時代는 모든 것이 機械化되고 人間까지 機械化됨으로써 人間이 極度로 劃一化되고 受動化됨으로서 人間的인 것이 喪失되는 狀況)
5. 政治的 人間疎外(官僚制的 組織에 있어서 官僚的 統制에 의한 人間의 統制와 이로 인한 人間性의 束縛과 組織의 硬化 그리고 政治的 權力的 濫用과 暴力에 의해 人間과 時代의 閉塞을 增大시키는 狀況) 등이다.¹⁾

이러한 人間疎外는 흔히 産業社會 그것도 資本主義經濟體制에만 特有的 現象으로 보고 이를 前提로 論議되는 傾向이 濃厚하나 現代社會에 있어서 産業化·工業化는 體制關聯的 事實은 아니다.

1) 務台理作, 「現代의ヒューマニズム」(岩波新書), 岩波書店, 1974, pp. 92~107.

그리고 人間疎外를 發生的 主體의 側面에서 볼 때 疎外를 作動시키는 側 즉 疎外의 能動面과, 被動的으로 疎外에 露出되는 側 즉 疎外의 受動面의 兩者가 때로는 支配者와 被支配者, 意思決定者와 意思決定追從者, 命令者와 被命者, 그리고 經營者와 從業員들의 兩者間關係로서 形態를 달리하여 나타나나 經營者와 從業者 間의 疎外形態는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 典型的으로 表現되기 때문에 여기에 勞使關係의 理念型 혹은 一般型이 把握되고 또한 疎外의 兩側面의 存在相 如何가 그 產業의 勞使關係의 特殊性을 規定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러한 特殊性 즉 勞使關係의 特殊性은 當該產業 勞動의 疎外特性을 反映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疎外形態와의 關聯에서 漁業勞動의 特殊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漁業勞動과 人間疎外

위에서 본 疎外形態와 漁業勞動과의 關係에서 人間疎外의 展開相을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人間勞動의 疎外와 漁業勞動과의 關係는 賃勞動에 있어서 勞動과 그 成果享受와의 乖離 그리고 人間的 結合關係의 瓦解와 漁業勞動과의 關係가 그 內容을 形成한다. 이것은 賃金問題와 人間的 紐帶關係 維持의 問題로서 理解된다. 漁業勞動에 있어서 賃金問題는 賃金問題로 集約된다. 賃金問題의 一般的 形態가 都中經費控除賃金形態이다. 이러한 賃金形態에 있어서는 勞動者인 船員은 生産手段인 漁船·漁具 등은 所有하지 않으나 都中經費控除에 의해 運營經費의 一部를 負擔함으로써, 그리고 賃金控除를 통하여 經營成果分配에 參與함으로써 勞動과 그 成果享受와의 乖離에서 理解되는 賃勞動關係와는 그 性格을 달리한다. 漁船漁業勞動 역시 生産手段의 私有制度에 의한 人間疎外가 認定안되는 바 아니나, 勞動의 目標인 生産의 過程, 協力, 그리고 成果等에 대한 表象(image)을 갖지 않은 抽象的 勞動이 아니고²⁾ 分業化되고 特化(specialized)한 作業이 單獨으로 혹은 關聯있는 隣接作業과 더불어 하나의 作業體系를 形成하며 經營成果와는 無關하게 그 自體 完結된 勞動으로서 機械化되었다 하더라도 投網—曳網—揚網—漁獲物處理 혹은 投網—揚網—漁獲物處理에 이어지는 一連의 漁撈工程 즉 全生産工程이 單純協業體系로서 「完結될 때」有意義한 作業體系로서 意味가 賦與된다. 그리고 강한 人間的인 紐帶關係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勞動體系가 漁業勞動이다. 또한 漁獲物處理는 生産量으로 經營成果 그리고 賃金에 直接的 그리고 直線的 影響要因으로 直結된다. 漁業勞動을 이와 같이 把握될 때 具體的 勞動으로서 漁業勞動의 存在相을 보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漁業勞動에서 人間勞動의 疎外關係가 完全히 克服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手段의 所有에 의한 人間疎外의關係源泉인 船主(企業主)와 船員과의 關係가 船員으로하여금 賃金을 어디까지나 賃金으로서 生活手段으로서 認識케하여 生活人으로서의 欲求가 充足되지 않을 때 不滿으로 作用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에서 漁業勞動에 있어서 勞動의 展開形態가 工業勞動에 의해 一般的 抽象的으로 理解되는 勞動에 비해 疎外의 程度가 相當히 輕減됨을 理解할 수 있다.

두번째, 企業規模의 擴大에 의한 共同體의 組織의 解體에서 派生되는 疎外와 漁業勞動과의 關係는 組織規模의 擴大에 따른 組織成員間의 利害關係의 衝突이 近代 個人主義 思潮와 더불어 나타나

2) 務台, 前掲書, p. 94 參照.

는 疎外現象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으며, 勞使間의 對立도 이러한 觀點에서 露現된다고 볼 수 있다. 現代社會의 特徵은 「組織社會」로 規定되는 바 組織間의 시스템의 統合 없이 社會는 成長·維持가 不可能하다. 그리고 個人의 利害 특히 目標은 組織을 媒介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從來 成員間의 同質性과 共同體의 主體化에 근거를 둔 共同體에서 成員間의 異質化와 共同體의 客體化가 進行되는 가운데 共同體의 解體를 볼 수 있으며 더구나 組織規模의 擴大가 組織機能의 多樣化와 能率增進에 의한 組織合理化意圖는 共同體의 意識이 疏遠케 하는 作用을 한다. 여기에 人間疎外를 보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共同體成員間의 異質化와 共同體의 客體化는 從前의 一體型共同體에서 集列型共同體로의 轉換을 可能視하는 것으로 理解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組織의 本質은 社會的 組織에 있으며 利害를 달리하는 成員間에 統合意識 없이는 組織自體가 成立·維持할 수 없고 더 나아가 社會人으로서 人間生活 그 自體의 存立이 危險에 直面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組織(企業)規模의 擴大와 機能의 多樣化와 能率化에 根據하는 人間疎外는 企業規模의 擴大가 生産單位(操業單位)規模의 擴大와 機能의 多樣化를 同時的·直線的으로 隨伴하지 아니하는 漁業經營에 있어서는 그 趨向을 달리한다. 企業의 規模擴大가 生産過程의 機能의 分化, 機能間의 計算合理的 統合, 生産業體의 規模擴大 그리고 生産量의 增大를 同時的으로 隨伴하는 工業生産과는 달리 漁業生産에 있어서 生産單位體인 漁船規模는 操業海域, 漁獲對象, 漁獲方法에 따라 그리고 漁獲活動에 있어 要求되는 機動性등에 따라 그 規模擴大는 重要的 制約을 받으며 規模擴大가 生産量에 그대로 直結되지 않는 特徵을 갖는다. 그리고 漁業勞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單純協業 勞動體制로 豫測 不許의 自然環境에 瞬間的 適應이 要求되는 Contingent한 統合(contingent integration)을 必要로 한다. 또한 漁業勞動은 <表-3>에서 볼 때 1회의 出漁에 所要되는 出漁日數는 大型機船底引網漁業에서는 쌍끌이式이 19.4日, 외끌이式이 11.3日, 그리고 大型旋網漁業은 23.4日이다. 이 期間은 海上에서 船內共同生活을 營爲하면서 漁業活動에 從事하는 期間이다. 이러한 共同生活이 年間을 通하여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쌍끌이式이 14回 272日, 외끌이式은 23回 259日, 大型機船旋網漁業은 12回 281日 繼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漁業活動은 이와 같은 船內의 共同生活을 營爲하면서 進行되는 勞動이다.

<表-3> 出漁狀況(1986年)

業 種	出漁回數	出漁日數※	漁撈日數※
쌍끌이大型機船 底引網漁業	14	272	230
		19.4	16.4
외끌이大型機船 底引網漁業	23	259	219
		11.3	9.5
大型旋網漁業	12	281	228
		23.4	19.0

資料, 漁業經營調查報告 1987年, 水協中央會 1987. ※ 上段…年間日數, 下段…一回出漁當日數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漁業勞動을 共同體의 關係에 의해 支持되는 程度가 높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한다. 漁業經營도 營利性原則에 支配되는 企業에 의한 經營이기 때문에 近代的 勞使間의 利害

衝突이 있다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으나 이 關係는 前述한 짓가림制의 關係로, 所謂 勞資關係의 對立을 意味하는 尖銳한 對立關係는 짓가림制下에서 制度的으로 解消될 基盤을 가지고 있으며 生産過程에 있어서 船內共同生活을 통한 單純協業勞動體系 그리고 生産單位體의 規模擴大制約要因등에 의한 共同體의 關係의 存續은 企業規模擴大에 의한 共同體의 組織의 解體에서 派生하는 疎外와는 同一한 脈絡에서 人的疎外를 規定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세번째로 Mass-communication과 Mass-production에 의해 産業化過程에서 不可避하게 나타나는 受動化에 의한 疎外와 漁業勞動과의 關係는 生活의 大衆化와 漁業從事者生活과의 關係로 置換될 수 있다. 生活의 劃一化 特히 受動化는 前述한 바 있는 抽象的 勞動과 더불어 勞使關係에 있어서 行爲主體者의 主體的 思考·判斷 缺이는 勞使關係行動이 意圖하는 非人間化에서 再人間化에 의한 疎外의 克服意圖가 도리어 非人間化 즉 再疎外를 낳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Potentiality를 갖는다. Mass-communication과 Mass-production에 의해 特徵지워지는 現代生活의 大衆化는 漁業從事者 혹은 勞動者라 하여 無關할 수 없는 生活樣態이다. 따라서 生活의 劃一化·受動化에 의해 漁船員의 勞使關係의 행동 역시 疎外克服을 위한 行動이 새로운 疎外를 낳게됨을 否定할 수 없다. 이 點에 있어서는 漁業勞動의 主體인 漁業從事者 즉 船員 역시 生活人으로서 産業社會와 隔離된 存在가 아닌 이상 人間疎外를 否定하거나 勞使關係의 一般的 論理와 脈絡을 달리하는 것으로 理解할 수는 없다.

네번째 技術革新에 의한 疎外와 漁業勞動과의 關係는 機械化의 進展이 機械와의 關係에 人間의 位置가 어떻게 規定될 것인가에 關聯된다. 人間疎外의 問題로 機械의 發明·發達 그리고 끊임없는 技術革新과 이로 인한 産業의 高度化가 없었다면 生産者는 生産活動에 의해 產出되는 生産物에 自己를 實現하고 生産에 있어서 主人의 位置를 確保함으로써 人間疎外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技術革新은 人間으로 하여금 機械에 대해 從屬된 者의 位置를 強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人間機械化의 現象은 그 程度가 더 深化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現實이다. 漁業勞動에 있어서도 機械化는 계속 그 程度를 더해 가고 있는 實情임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漁業勞動의 機械化는 가다랭이釣漁業 또는 오징어釣漁業등에 있어서는 漁獲動作이 전부 機械化되어 機械的 漁業의 發達을 볼 수 있으나 底引網漁業 또는 旋網漁業에 있어서 主要漁撈過程인 漁場深索—投網位置選定—投網—曳網—揚網—漁獲物處理 혹은 魚郡深索—漁群捕捉—投網—締網—揚網—漁獲物處理의 各階段는 個別的으로 機械化의 相當한 實現을 보고 있으나 아직도 人間の 主體的 活動에 의해 各過程이 進行되고 또한 各段階의 連結活動은 人間の 判斷이 重要視되고 때로는 決定的인 作用을 하고 있다. 그리고 機械化는 必須的으로 機械裝置의 設置場所를 必要로 하는 바 漁船은 항상 漁撈對象物인 魚族의 動態에 따른 海上活動에 最適合하고 對象物 捕捉을 위해 短時間內의 迅速한 漁船運用을 必要로 한다. 이러한 경우 漁船의 大規模는 도리어 漁撈作業에 障礙要因으로 作用한다. 따라서 漁業勞動의 機械化는 技術的 側面 뿐 아니라 場所의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事情에 대해 平澤(Hirazawa)은 漁撈過程의 中心이 機械化되어 있음에도 手勞動이 많이 殘存하고 있는 理由로 ① 平面的 非連續的 勞動過程 ② 複雜多岐한 作業의 集積 ③ 漁船이라는 場所

的 制約 ④ 過剩乘船의 問題 ⑤ 手勞動에 의한 制約등을 들고 있다.³⁾ 이러한 平澤의 指摘은 漁船 技術革新에 의해 어느 程度까지는 克服可能할 것이나 大幅의이고 根本的인 克服은 不可能한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여기에 漁業勞動에 있어서 人間勞動의 主體性이 主張될 餘地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技術革新에 의한 人間疎外가 工業勞動과 同一한 脈絡에서 主張될 수 없는 緣由를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政治的 人間疎外가 漁業勞動에 어떻게 具現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우선 官僚制에 의한 人間疎外가 問題로 登場되는데 官僚制는 組織規模의 擴大, 職務의 複雜化, 이에 따른 職務의 專門化의 進行과 公式化의 進展은 組織硬化現象을 질게 한다. 여기에 組織은 成員으로 하여금 主體的 性格을 喪失케하고 客體化시킴으로서 人間疎外의 現象을 나타내게 한다. 그런데 漁業經營組織 특히 漁船組織에 있어서 船海, 機關, 通信 그리고 甲板등으로 職能分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分化된 職能은 漁業生産活動의 全過程을 通하여 統合되어 作動함으로써 自己充足的 意味를 갖게 된다. 換言하면 官僚制에 의해 理解되는 組織構造가 機械的 構造인데 대하여 漁業經營組織(漁船組織)은 有機的 構造인 것이다. 그리고 漁業勞動은 豫期할 수 없는 危險을 同伴한 海洋에서 恒常 狹隘한 船內生活에서 小規模集團에 의해 共同的으로 또한 時時로 變化하는 海洋自然條件에 非定型的으로 機敏하게 勞動強度가 높은 重作業勞動에 의한 能動的 對處에 의해 이루어지는 勞動이라는데 漁業勞動의 本來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더구나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漁村人力, 즉 農漁村등에서 一次産業人力의 流出로 人力不足現象이 더해가는 狀況에서 勞動에 대한 管理行爲는 權威主義 보다는 人間關係論의 管理行爲일 것을 要求한다. 이러한 點에서 官僚制의 階層組織에서 權威主義的인 管理行爲에 의한 人間疎外와는 역시 그 趨向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漁業勞動도 社會的 勞動이기 때문에 政治權力의 濫用 혹은 이러한 濫用に 대한 對抗의 政治勢力에 의거하거나 혹은 僞裝的 政治行爲에 의한 政治的 疎外와 無關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漁業勞動 내지 그 組織과의 直接的 關聯性만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지금까지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 勞使의 利害는 統合不可能한 對立的인 것이란 Dogma的 觀點에서 人間疎外내지 勞動疎外와의 關係에서 漁業勞動을 理解하려는 試圖가 大勢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漁業勞動에 있어서는 産業化의 進展에 따른 工場勞動에서 抽出된 바 疎外 理解와는 그 脈絡을 같이 할 수 없음을 指摘하였다. 다음은 經營에 있어서의 人間的 統合關係를 特徵지우고 諸問題를 疎外라는 觀點에서 檢討한 Goetz Briefs의 見解를 中心으로 漁業經營에 關聯지워 疎外問題를 보기로 하겠다.⁴⁾

Briefs는 人間的 統合關係에 있어서 疎外問題를 經營의 技術的 過程의 觀點에서 다음의 4類型으로 나누고 있는데, 1. 所有物疎外, 2. 作業疎外, 3. 職場疎外, 4. 從業者疎外등이다.

所有物疎外(Eigentumsverfremdung)는 經營의 技術的 過程에 起因하는 것으로 勞動手段은 勞動

3) 平澤豐, 漁業生産의 發展構造, 未來社, 1961, pp. 85~86.

4) Goetz Briefs의 「疎外」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

藻利重陸, 勞使管理의 經營學(增補版), 千倉書房, 1967, pp. 87~98.

市原季一, 西獨經營社會學(增補版), 森山書店, 1967, pp. 65~81.

者의 所有에서 떠나 兩者間에 人間的 統合이 成立되지 않은데서 作業手段에 勞働者自身の 人間的·主體的 意味를 發見할 수 없다는 意味에서의 疎外를 말한다. 이러한 生産手段의 非所有關係는 漁業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이나 大型旋網漁業에서 通用되고 있는 짓가림制賃金制度下에선 都中經費項目으로 ① 油類, ② 魚種子, ③ 船具, 漁網 및 同 附屬品費, ④ 作業으로 생기는 甲板部 補修 및 船具 消耗品費, ⑤ 作業으로 생기는 機關修理, 機關部 附屬品 補充修理 및 消耗品費들 중 生産手段關聯費用의 船員負擔을 規定하고 있다. 이들 費用의 負擔이 곧 生産手段에 대한 船員의 人間的·主體的 意味 賦與와 直結되는 것은 아니다. 換言하면 이들 經費負擔이 生産手段에 대한 支配·所有의 기쁨등을 感得함으로써 生産手段에 船員自身の 人格의 延長을 發見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漁業勞動은 生産手段의 合理的·節約的 利用에 의한 經費節減이 報酬의 增加를 期待케 한다. 이러한 關係가 生産手段管理의 手段이며 生産手段에 대한 自己管理를 意味하는 것이란 事實은 所有物疎外概念에 의해 一義的으로 處理할 수 없는 Nuance를 남기고 있다.

作業疎外(Arbeitsverfremdung)는 勞動의 機械化와 專門化에 의한 同一作業의 反復으로 個性排除와 全體의 勞動에 대한 精神的 斷絶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 點은 漁業勞動은 機械化의 導入이 곧 勞動體系가 機械的 勞動體系로 轉換됨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手勞動體系가 主體的 地位를 持續하고 있는 漁業勞動의 實態는 船員으로 하여금 船上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漁業全體를 認知케 하며 그 成果까지도 確認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單純協業勞動인 漁業勞動은 勞動의 單調함도 排除하고 있다. 여기에 漁業勞動에 있어서는 作業疎外는 그 意味를 喪失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職場疎外(die Verfremdung des Werkraumes od. Arbeitsraumes)는 經營空間(Betriebsraum)이 生活空間(Lebensraum)에서 目的空間(Zweckraum)으로 轉化함으로써 生産空間에서 人間이 맛 볼 수 있는 感情的 餘裕感이 喪失됨을 意味한다. 이 點 漁業勞動은 船內共同生活에 의해 營爲되는 勞動으로 生活空間이 곧 目的空間임을 認識케 한다. 그러나 經營空間의 生活空間化는 單純한 居住空間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生活의 快適感, 勞動條件, 衛生上의 諸問題 그리고 安全保護施設등의 質的 向上·轉換의 同伴을 必須的으로 한다. 그런데 船內居住勞動인 漁業勞動은 勞動場所(漁場)와 勞動對象(魚類)의 本質이 遊動性에 있기 때문에 勞動者를 作業場所에 까지 同時的으로 運送하여야 할 必要에서 船內共同生活이 必要하게 되며 이러한 船內居住 없이 漁業勞動 自體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船內共同生活은 生活空間으로 經營空間을 把握케 하는 것이 아니고 目的空間化의 한 手段인 것이다. 이것은 漁業勞動의 技術的 過程의 特殊性에 의한 勞動强制의 한 機能役割을 擔當함을 意味하며 더구나 船舶空間의 限定性은 經營空間의 生活空間化를 困難케 하고 勞動의 拘束性을 強化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 職場疎外는 漁業勞動에 있어서 보다 強化될 可能性을 內在하고 있다는데 理解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作業者疎外(die Verfremdung der Betriebspersonen od. Betriebsangehörigen)는 勤勞者相互間의 結合關係의 非人間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近代 大規模工場에서 勤勞者間의 關係는 目的的 關聯性이 濃厚하고 共同體的 相互關係와는 疏遠한 關係가 되고 있다. 그러나 單純協業勞動인 漁業勞動은

<表-3>에서指摘되듯 反復的인 船內共同生活을 通하여 이루어진다. 비록 職場疎外關係의 可能性이 濃厚하다 하더라도 共同生活과 協同的 作業을 通한 人間結合의 維持는 단순한 目的的 關係를 넘어 共同體의 結束을 強化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漁業勞動이 成立하기 위해 漁船員間的 便宜의 同調에 의한 것으로 理解된다. 즉 船員은 비록 船內共同生活을 營爲하나 雇傭關係에 의한 雇傭勞動者로서 生活人으로서 異質化에 의해 把握되는 Egoist이나, 漁業勞動의 性格上 共同生活을 通하여 船員個個人에 의해서는 統制할 수 없는 規制에 의해 劃一化 그리고 同質化 되어 共同體의 結束가 客體化된데 集列型共同體의 關係의 形成을 볼 수 있게 한다.⁵⁾ 여기에 우리는 作業者疎外가 成熟하지 못한데 漁業勞動을 把握하는 한 契機를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人間疎外의 側面에서 漁業勞動을 吟味하였다. 이에서 漁業勞動은 産業化過程에서 抽象的으로 理解되는 勞動과는 많은 面에서 疎外關係가 未成熟한 狀態이고 여기에 漁業勞動의 特性을 또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特性이 어떠한 勞使關係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다음에서 보기로 하겠다.

III. 漁業勞使關係에 있어서 社會的 關係의 特殊性

지금까지 勞使關係의 形成과 根源의 本質性을 産業化過程에서 經驗하는 人間疎外에 求하려 하였다. 그리고 人間疎外가 漁業이라는 産業現場에서 어떠한 意味關係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檢討한바 漁業勞使關係에서 把握되는 人間疎外관계는 産業一般에 비해 未成熟한 段階임을 指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人間疎外關係가 勞使關係라는 社會的 關係(societal relations)가 展開되는 過程에서 特定産業特有的 樣相을 나타낸 것이 다름 아닌 産業別勞使關係의 特殊性인 것이다.

勞使關係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自由經濟體制下에서 企業 내지 經營에 있어서 經營的 意思決定者이 經營者(集團)와 作業擔當者인 從業員(集團)사이의 社會的 關係이나 兩者間關係는 雇傭關係를 出發點으로 經濟的 關係로서 理解되나 實은 社會的 關係(societal relation)로서 多樣한 關係樣相을 갖게 된다. 여기에 特殊性의 具體相이 把握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漁業勞使關係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이 理解되리라 생각된다.

첫째, 社會關係(social relations)로서 漁業勞使關係는 擬似的 雇傭關係(quasi-employment relation)를 中心으로 展開되고 있다. 勞使關係에 있어서 社會關係를 勞使가 서로 經營者로서 그리고 從業員으로서의 社會的 接觸의 樣相이라 操作的으로 定義할 때, 元來 이러한 接觸은 雇傭關係로서 그리고 兩者間的 關係를 規制하는 勤勞條件規定에 의한 接觸關係에 의해 具體化된다. 우선 雇傭關係에 있어서 漁業雇傭關係는 經營者에 의한 直接雇傭과, 一次的으로 船長(漁撈長)을 頂點으로 한 幹部船員과의 緣故등에 의한 雇傭先行關係가 雇傭의 實質的 意味를 가지면서 이를 媒介로

5) 集列型共同體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
間庭充幸, 共同體의 社會學, 世界思想社, 1981, pp. 41~42.

漁業勞使關係의 本質的 理解에 관한 考察

經營者(船主)과의 雇傭關係가 成立하는 間接雇傭이 複合的으로 存在한다. 더구나 漁業勞動은 機械化의 進展을 볼 수 있음에도 船內共同生活을 營爲하면서 船長(漁撈長)을 頂點으로 한 機能體系에 의한 勞動組織에 의해 遂行되며 共同體的인 人的 結合이 要求되기 때문에 船長(漁撈長)과의 緣故關係가 重視되지 않을 수 없다. 이 緣故關係는 經營者와의 것이 아니며 經營者는 雇傭關係의 한 쪽의 雇傭主體자라는 事實에서 船員은 雇傭關係에서 經營(者)과 船長에 대한 分裂忠誠的 感情을 갖게 된다. 이러한 關係는 賃金制下에서 船長의 役割이 船員賃金에 直接的으로 關聯되며 影響力을 갖기 때문에 그 程度가 增大된다. 여기에 擬似的 雇傭關係를 理解할 수 있다. 船長은 船員法第二章에 明示된 公法上의 職務와 權限(指揮命令權, 出航前의 檢査義務, 航海의 成就, 甲板上의 指揮, 在船義務, 船舶危險時의 措置, 船舶衝突時의 措置, 遭難船舶의 構造, 船內非常訓練, 水葬·遺留品의 措置, 在外國民의 送還, 航海日誌等 書類의 備置, 航行에 관한 報告等)에 의해 獨立不羈의 最高의 船舶運航責任者로서 責務를 負擔하는 외에, 被用者로서 特히 漁業에 있어서는 生産管理責任者로서 指揮監督의 任務를 擔當하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賃金制下의 漁業生産活動은 船長으로 하여금 經濟的 意味가 加重된 狀況에서 船員과의 社會關係가 緊密해 지게 된다.

이상이 퍼어스널(personal)한 關係로서 漁業勞使關係의 主要한 社會關係의 側面인데 대하여 集團의 次元에서 그리고 近代의 勞使關係의 次元에서 水産業協同組合이나 水產勞動組合과의 關係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大型機船底引網漁業에 있어서는 大型機船底引網水産業協同組合이, 大型旋網漁業에 있어서는 大型旋網水産業協同組合이 經營者團體로서 各各 釜山水產勞動組合과 團體協約을 締結하고 있다. 여기에서 兩水産業協同組合은 同業者의 協同組織 以外에 經營者團體로서 漁業勞使關係의 行爲主體者가 되고 있다. 그리고 (釜山)水產勞動組合은 地域職能別勞動組合으로서 역시 漁業勞使關係의 行爲主體者가 되고 있다. 이러한 兩集團에 의해 船主(經營者)와 船員 사이에는 集團的 社會關係가 形成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바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關係次元	關 係 構 造
雇 傭	船主(經營者)·船員間 雇傭關係
	船長(漁撈長)·一般船員間 擬似的 雇傭關係
團體交涉	水産業協同組合·水產勞動組合間 勞使關係

圖示된 諸社會關係는 各各 獨立된 役割 領域을 가지고 漁業勞使間의 社會關係를 形成케 하고 있다. 즉 船主·船員間의 雇傭關係는 勞使의 公式的 關係樹立의 機能을, 船長·一般船員間의 擬似的 雇傭關係는 勞使關係樹立의 先行的 機能과 共同體的 社會關係樹立의 機能을, 그리고 水産業協同組合·水產勞動組合間의 勞使關係는 公式的 勤勞條件의 規定機能에 의한 産業(業種)次元의 勞使關係 樹立機能을 獨立的으로 遂行하고 있는데 特殊性을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諸關係는 相互 機能上의 獨立性을 가지면서도 複合的으로 漁業勞使關係를 規定하고 있다.

둘째, 社會的 關係로서의 勞使關係는 政治關係로서의 한 側面을 갖는데 社會的 制度로서의 勞動

조합의 公的 認定과 企業에 의한 勞動조합의 受容에 의해 勞使關係의 正常化를 期待할 수 있다. 이는 企業에 있어서 人事管理가 單純한 人力管理의 次元에서 人力所有者에 대한 人間管理도 包括하는 次元에로의 質的 轉換을 契機로 한 勞使關係의 定着을 內容으로 한다. 이러한 勞使關係의 確立은 全般的인 國民生活增進의 積極的 實現을 國家目標로 하는 福祉國家觀과 企業(集團)이나 勞動조합도 自立的 團體로서 國家社會를 構成하고 있다는 多元的 國家觀에 의해 勞使關係도 國家維持機能을 遂行하는 政治關係로서 規定되어야 한다. 특히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이나 大型旋網漁業은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해 設立된 當該漁業經營者를 組織對象으로 한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이 經營者 團體로서 勞使關係의 한 쪽 當事者가 되고 또 한편은 釜山水產勞動組合이라는 地域職能別組合이 勞使關係의 當事者가 되고 있다. 元來 水産業協同組合은 「…漁民…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그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의 增強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水産業協同組合法 第1條)는 目的規定과 「…組合員을 위하여 差別 없이 直接 最大의 奉仕를 하여야 한다」(水産業協同組合法 第6條1項)는 指導原理로서의 奉仕原則의 規定에서 把握되는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目的과 奉仕原則의 兩者는 水産業協同組合의 資本主義體制原則인 營利原則을 直接的으로 受容하는 것이 아니라 漁民으로 하여 自由經濟原則에 의해 나타날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의 資本機能의 脆弱性을 克服하여 보다 能率的 經營을 實現시키고 資本主義經濟의 보다 圓熟한 運營에 組合員 모두 差別 없이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漁民機關임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協同組合은 그 組合員이 個人的으로 營利原則을 指導原理로 受容하고 있다 하더라도 協同組合인 以上 欲求充足原理를 指導原理로 한 資本主義經濟體制下의 事業者를 構成員으로 想定하고 있기 때문에 狹義의 企業家集團과는 質적으로 相異하다. 그리고 釜山水產勞動組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地域職能別勞動組合이다. 現行 우리나라의 勞動組合法은 企業別組合을 基本으로 하면서 例外로 「…特殊한 作業 環境에서 勤勞하여 事業場單位勞動組合의 設立이 不適合한 勤勞者의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單位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勞動組合法 第13條1項)라는 規定에 의해 水産業勞動組合은 例外的 組合形態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 水産業을 代表할 수 있는 大型機船底引網漁業과 大型旋網漁業은 疑似的 經營者團體(quasi-managerial association)인 水産業協同組合과 우리나라의 事情으로 例外的이라 밖에 볼 수 없는 組合形態인 釜山水產勞動組合 사이에 「勞使間에 公正한 秩序維持 및 勤勞條件의 改善 向上과 水産經濟의 民主的 發展을 위하여 相互理解와 信賴」를 企圖하는 勞使關係가 形成됨으로서 漁船員을 위한 國家的 福祉機能을 內容하는 政治關係로서의 勞使關係(狹義)의 形成을 볼 수 있다.

세째 近代의 勞使關係는 法律關係로 規定된다. 勞使關係를 雇傭에 대한 人間活動의 規制에 關聯된 特殊한 一連의 現象(a particulate set of phenomena associated with regulating the human activity of employment)이라 正義지울 때⁶⁾ 「規制」가 妥當性을 갖기 위해서는 國民一般으로 부터의 支持를 必要條件으로 한다. 이의 한 方法이 法律에 의한 規制인 것이다. 여기에 勞使關係關聯法律과 더불어

6) Michael Salamon, Industrial Relations, Prentice Hall, 1987, p.24.

어 海洋關係關聯法律에 의해 規制를 받게 된다. 勞使關係의 原初的 形態인 雇傭關係는 當事者(雇傭主와 被雇傭者)間的 相互 獨立된 意思表示와 合意에 의한 契約行爲로서 民法上的 關係로서 規定되나 團體交渉을 根幹으로 한 勞使關係에 있어서는 「勞動條件의 決定權」(勞動組合法 第13條1項)이 있는 使用者 또는 그 團體와 「勤勞條件의 維持·改善과 勤勞者의 福祉增進 其他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勞動組合法 第3條)을 圖謀하는 勞動組合間에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할 수 있도록 勤勞條件의 向上을 企圖하는 憲法上 規定된 法律關係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的 法律關係는 漁業勞使關係라 하며 變質은 있을 수 없다. 다만 漁業이란 產業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雇傭關係에 있어서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條件外에 船員法의 勤勞條件도 同時に 充足되어야 하며, 또한 一定한 資格要件의 具備를 必要로 하는 船舶職員의 雇傭이 義務지워질 경우는 船舶職員法 또는 그 施行令에 規定된 資格要件을 具備한 者만을 對象으로 하여야 하며, 그리고 團體交渉의 主內容인 勤勞條件의 決定에 船員法上 明示된 最低基準을 理由로 勤勞條件의 低下를 禁止하는(船員法 第2條 參照)등 一般的 勞使關係의 法律關係에 비해 海上勞動으로 인한 制約이 強化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團體交渉에 있어서 締結되는 團體協約은 使用者와 勞動組合間에 締結된 集團契約으로서 法律上 契約關係이나 漁業團體交渉의 當事者인 水產業協同組合이나 水產勞動組合은 비록 船主(使用者)와 漁船員을 構成員으로 하는 集團이라 하더라도 水產業協同組合은 그 法的 性格이 經濟的 事業者團體인 使用者團體와는 質的으로 相異하고 水產勞動組合 역시 橫斷的 組織으로 團體協約의 履行當事者인 個別 漁業經營體와의 關係가 迂迴的이기 때문에 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에 疑問이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文化關係로서의 勞使關係는 社會的 制度로서 環境適應的으로 制度化된 것으로 社會의 文化的 傳統, 風土 등에 따라 獨特한 樣相을 갖는다. 좋은 例로 日本의 經營家族主義의 勞使關係 그리고 獨逸에 있어서는 1848年 「統一獨逸」을 實現시키고자 召集된 Frankfurt 議會에서 試圖된 바 있었던 Fabrikausschuss를 源流로 한 共同決定式 勞使關係를 들 수 있다. 漁業勞動에 있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生産活動이 船內共同生活을 基盤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는 自然環境適應的 임과 同時に 漁業産業活動이 機能的 分化的 未熟과 勞動對象에 대한 受動的 支配 그리고 이에 卽應해야 할 單純協業的 勞動體系는 船長(漁撈長)을 頂點으로 海上에서 對人關係能力(interpersonal competence)의 開發에 의한 協同을 무엇 보다 必要로 하기 때문에 船內共同生活에 의한 生活共同體의 形成이 規範性을 갖게 된다. 이러한 生活共同體를 基盤으로 經營主인 船主와 그리고 위에서 말한 集團間的 勞使關係가 形成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漁業勞使關係는 生活共同體的 勞使關係라 理解되고 깃가림제도 이의 한 具現形態라 생각되며, 여기에 漁業勞使關係의 한 特徵을 把握할 수 있다.

다섯째 心理的 關係의 勞使關係側面을 보면 勞使關係는 人間의 心理的 欲求의 程度에 따라 勞使關係相에 많은 變化를 볼 수 있다. 즉 欲求水準이 低次元일 때는 附加價值的 分配을 中心으로 한 勞使關係相이 濃厚하게 나타날 것이며, 高次元일 때는 組織內에서의 職位, 職務, 經營意思決定構造 등 組織構造關聯事項을 中心으로 한 勞使關係의 展開가 豫想된다. 그리고 心理的 欲求側面은 職

業의 社會的 地位와도 깊은 關係를 갖는다. 이는 個性發揮, 役割實現, 그리고 生計維持인 職業三要素間에 隨伴의 要素인 報償(生計維持)와 基準의 要素인 職業能力(個性發揮)과 職業의 社會寄與(役割實現)의 如何에 의한 二重構造에 의해 決定되는 것으로⁷⁾ 職業能力이나 職業의 社會寄與는 職業의 社會的 貢獻度 즉 社會的 地位를 規定하며, 例外는 있으나 社會的 地位가 높은 職業은 一般的으로 報償面에서도 높게 評價되고⁸⁾, 또한 社會的 地位의 程度는 心理的 欲求의 程度를 表現하는것이 一般的 傾向이라 理解되고 있다. 世界 最大의 漁業生産國家인 日本이 1955년에 實施한 職業의 社會的 地位에 대한 等級調査에 있어서 32個職業群 가운데 漁業者는 22位를 記錄하고 있었다. 이에서 漁船員에 대한 社會的 評價가 類推되며 또한 欲求水準도 低次元일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漁業勞使關係는 附加價值分配 中心의 勞使關係를 展開시킬 것이 라는데 特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섯째 勞使關係는 經濟關係로서 把握되는 程度가 높다. 本來的으로 勞使關係는 附加價值分配를 둘러싼 諸經濟關係로 集約되며 또한 經濟關係는 賃金問題로 再集約되는 趨向을 갖는다. 이는 日本勞使關係를 年功型勞使關係라 規定하며 또한 二次大戰後 勞使關係의 劃期的 事件으로 記錄되고 있는 所謂 「電産型」賃金體系에 의한 團體交涉規準을 導入하는 등의 諸事實에 의해 理解된다.⁹⁾ 이러한 賃金問題는 基本時間內에 期待possible한 單位勞動의 成果를 賃金決定의 基準으로 하여 出發하고 있는데 대하여 漁業에 있어서는 基準時間內의 勞動成果 測定이란 事實上 不可能하며 勞動成果는 事後的으로 決定되는 그 本來的 性格으로 인하여 賃金制賃金形態가 合理性을 가지고 主張되는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여기서 漁業勞使關係는 賃金制의 勞使關係로서 그 經濟關係의 特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繼續的 關係로서의 勞使關係에 대한 理解이다. 產業의 高度化는 不變資本의 投下額이 增大함으로써 資本의 固定化現象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技能 혹은 Know-how의 特殊化 그리고 勞動運動의 進展은 職場과 勞動者와의 結合程度를 높인다. 同時에 雇傭關係가 持續적으로 長期化되고 勤勞者를 一定職場에 固定的으로 結付시킴으로서 勞動의 固定化 現象이 나타난다. 여기에 勤勞者 個人 내지 職場次元에서 勞使關係는 長期的, 永續的 關係로 規定된다. 이에 대해 漁業의 雇傭關係는 漁期別 또는 航次別 雇傭關係가 慣行的으로 一般化되어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러한 雇傭關係의 斷續성과 短期的 性格이 漁企業으로 하여금 從業員인 漁船員把握을 困難케 할 뿐 아니라 漁船員의 企業歸屬意識도 매우 낮게 된다. 水産業協同組合과 水産勞動組合間의 團體次元의 勞使關係는 永續的 關係로서 存立하나 漁船員을 中心으로 한 個人이나 職場인 漁船次元에서의 勞使關係는 斷續적이고 短期的이라는데 漁業勞使關係의 또 하나의 特徵이 理解된다.

以上에서 漁業勞使關係가 社會的 關係의 次元에서 어떻게 展開되는가를 各社會의 基本的이고 中心的 課題라 생각되는 關係部分을 考察함으로써 그 特徵을 보았다. 그런데 勞使關係는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의 安定的, 確保·特性을 위한 그 展開에 勞使關係를 理解하여야 한다는 것이 基本的

7) 尾高邦雄, 新稿 職業社會學(第一分冊), 福村出版社, 1953, pp. 23~24.

8) 尾高邦雄, 職業의 倫理, 中央公論社, 1970, pp. 116~117.

9) 「電産型」賃金體系에 대해서는 西村裕通, 新版增增 日本의 賃金問題; 三ミネルウ書店, 1970, pp. 50~56 參照.

主張이었다. 換言하면 經濟關係側面에서 勞使關係에 接近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漁業勞使關係는 賃金制의 勞使關係라 그 特徵을 規定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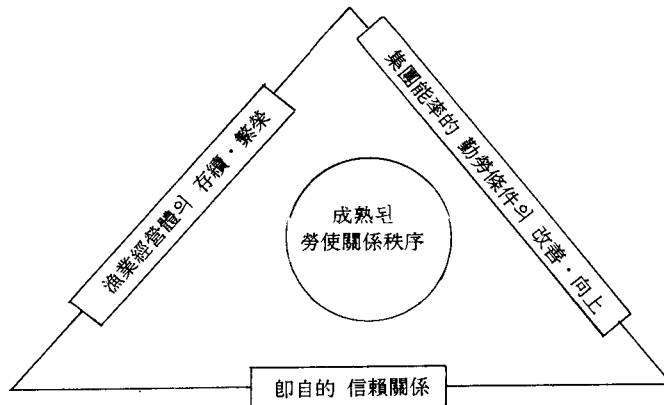
IV. 漁業勞使關係에 있어서의 規範性

勞使關係는 이미 말한 바와같이 自由經濟體制內에서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勞使間에 經濟的 分配 그리고 人間性 疎外의 問題를 根幹으로 多樣하게 나타난 社會的 關係이다. 그리고 勞使關係는 勞使 특히 勤勞者側이 自己充足의 水準의 經濟的 分配의 取得과 人間性 回復을 意圖하고 그 實現을 體制內에서 企圖함으로써 나타나는 關係現象이기 때문 自由經濟制度和 이 制度를 支援하는 中樞的 制度인 企業制度의 存續을 前提로 하지 않은 勞使關係는 否認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勞使關係의 規範性을 理解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漁業勞使關係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勞使間 公正한 秩序維持 및 勤勞條件의 改善 向上과 水產經濟의 民主的 發展을 위하여 相互理解와 信賴에 의해 團體協約을 締結한다는 大型機船底引網水協과 釜山水產勞動組合間의 團體協約書 序文의 「公正한 秩序維持 및 勤勞條件의 改善 向上」은 水協組合員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漁業經營體가 存續·繁榮을 계속적으로 期待할 수 있도록 健全한 自由經濟秩序의 維持·改善과 이를 基盤으로 하고 또한 堅固하게 하기 위한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을 漁業勞使關係의 主要課題로 提示하고 있는 것이라 理解된다. 따라서 漁船員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도 漁業經營體의 存續·繁榮 그리고 自由經濟體制의 維持·發展의 前提 없이 勞使關係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公正한 秩序維持…」라는 表現의 「公正한」이란 말은 社會的으로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線에서의 秩序維持를 뜻하는 것으로 社會의 繼續의 構造인 經濟는 社會關係로서 動態의인데 그 本質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動態的이란 「發展의 動態」일 때 有意義이며 自由經濟體制의 中樞的 支持機關인 企業이 社會的 存在로서의 存續·繁榮을 위한 秩序維持가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漁業勞使關係에 있어서 “漁業經營體의 存續·繁榮”을 期하고 이를 前提로 하는 “漁船員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이라는 두 要因이 相互作用에 의한 勞使兩側의 成熟한 秩序가 社會的으로 그 妥當성이 認容될 때 公正한 勞使間 秩序를 理解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은 勞使間 秩序의 確立이 다름 아닌 水產經濟의 民主的 發展을 위한 길이며, 「民主的」이라 함은 船主와 船員에 의한 勞使相互間의 尊重과 相對方의 立場 理解를 그 內容으로 한다. 漁業經營이 一般產業經營과 區別되는 第一要因은 經營이 이루어 지는 場所가 陸上이 아닌 海上이며 船主 내지 經營者와는 隔離된 場所에서 生産活動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漁業生産活動이 經營者에 의해 直接 把握되지 않고 있는 狀態에서 營爲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며, 兩者間의 信賴는 어느 產業 보다도 더욱 要求되는 바, 이러한 信賴에 의한 相互尊重과 相互理解 없이 漁業經營은 存立할 수 없다. 人間에 의해 이루어 지는 모든 社會關係가 信賴를 必要條件으로 하고 있으나 漁業生産活動은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經營者와 隔離된 狀態에서 漁船員集團에 의한 自主管理的 生産活動이 要求되며 場所를 隨時로 移動하면서 變動의 恆時性을 本來的 特徵으로 하는 海上狀況에 對應하면서 이루어 지는 狩獵的 財貨生産活動이라는데 特徵

을 찾을 수 있는 生産活動이며, 또한 生産活動狀況은 그 生産過程이 定型的이라기 보다는 非定型的인 것으로 그 生産活動의 性格은 自主管理性, 狩獵性, 그리고 非定型性에 의해 表現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漁業經營體가 存續·繁榮하기 위해서는 船主와 船員間의 信賴關係가 堅固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바 漁業勞使關係는 自主管理性, 狩獵性 그리고 非定型性을 內容으로 하는 漁業生産活動을 媒介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生産活動이 船內共同生活을 通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여러번 말한 바 있었다. 여기에 漁業勞使關係는 漁船員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은 共同體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이어야 한다는 前提條件이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그 共同體의 性格은 集列型이라 말한 바 있었다. 즉 漁船員들이 船內共同生活이 漁船員間에 「一體感(Einsführung)」을 媒介로 한 것이 아니라 共同活動·共同生活을 營爲함으로써 보다 많은 利益을 얻어 낼 수 있는 便宜的인 同調에서 形成되는 Egoism의 依支關聯에 의한 集列型的(Sérialté)인 結果에 의한 것이며, 漁船員들이 그 職務를 遂行하고 所得을 얻는 場所로서 漁船이 基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勤勞條件도 漁船員 個個人的 利己的 側面이 止揚됨으로써 보다 많은 利益을 얻을 수 있도록 漁船員集團能率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이 要求된다. 그리고 信賴關係도 共同體의 信賴關係가 要求된다. 共同體의 信賴關係는 漁船員의 船內共同生活이 漁業生産에 있어서 不可缺의 連帶性을 한층 強化하는 手段이 되고 이를 媒介로 船員間의 橫的 結束과 從的 秩序가 維持되는한 成立되는 即自的 信賴關係를 말한다. 여기에서 即自的(an-sich)이라 함은 漁船員 各自의 現代社會에서 利己的인 私的 個人으로서 海上集團勞動인 漁業勞動이 持續性을 가지며 利己的 利益을 보다 많이 抽出하기 위해 Egoism의 依支關聯體로서의 船內共同生活에 對立되는 實體가 閉鎖된 海上生活에서 發見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生活形態가 抵抗性을 喪失하고 船內階層關係에 從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即自的 信賴關係를 바탕으로 漁業經營體의 維持發展이 企圖되고 集團能率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이 實現되는 가운데 成熟된 勞使關係秩序의 確立이 規範으로 要請된다.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같이 集列型共同體를 支持함과 같은 卽自的 信賴關係를 바탕으로 그 위에 漁業經營體의 存續·繁榮과 集團能率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을 意圖함으로써 形成되는 成熟된 關係에 漁業勞使關係의 規範型을 求하고자 한다. 이러한 漁業勞使關係의 關係構造는 짓가림制의 勞使關係에 의해 보다 具體化된다. 왜냐하면 漁業經營體도 資本主義經營으로 體制原理인 營利性原則의 具現을 위해 財貨生産을 營爲한다. 그런데 「財貨」가 水産物 特히 魚類이다. 여기에 漁業經營體의 營利實現은 魚類의 經濟的 性格에 의해 支配를 받지 않을 수 없다. 經濟的 財貨로서의 魚類와 他財貨 一般과의 差는 첫째 生産의 不可測性에 있다. 財貨一般은 生産過程에서 種類, 量, 그리고 質을 알고 市場需要豫測에 의해 事前에 調節될 수 있는데 대하여 魚類는 生産活動의 結果 즉 生産過程의 最後段階에서 種類, 量 그리고 質의 把握이 可能하며 더구나 生産物의 質은 變動的이어서 貯藏方法, 期間, 氣溫, 取扱方法 등에 의해 달라진다. 여기에 漁業經營의 不安定性을 理解하게 된다. 두번째로 위의 供給側面의 不可測性에 대하여 需要側面에서 臨機的 意思決定型을 들 수 있다. 財貨一般에 있어서 生産者側의 有效한 marketing活動에 의해 그리고 製品의 規格性에 의해 計劃性있는 需要活動이 可能한데 대하여 魚類에 있어서는 種類, 量 그리고 質등을 豫知할 수 없기 때문에 時間的으로 購買時間과 거의 同時的으로 購買對象의 種類, 量, 質이 決定된다. 세번째로 價格의 第三者決定性을 들 수 있다. 現代産業에 있어서 Visible hand에 의해 決定된 財貨價格이 그 供給量과 需要量을 決定하는 作用을 할 수 있는데 대하여 魚價는 需要者에 의해 決定되는 강한 趨勢를 갖는다. 즉 魚價는 魚類의 供給과 需要量의 決定作用을 못할 뿐 아니라 市場에서 決定된 價格에 의해 販賣가 成立되는 것이 通常이다. 이러한 生産物인 魚類의 經濟的 特徵은 漁業經營者로 하여금 計劃的 生産活動의 障礙要因이며 經營體의 存續·繁榮의 不安定함을 免치 못하게 한다. 여기에 이러한 不安要因을 最少化시키기 위한 方法이 經營成果 確認後의 清算方式인 짓가림制인 것이다.

짓가림制에 있어서도 이미 確定된 外部給付費用的 輕減策으로 都中經費控除制과 附加價値의 勞使兩分制가 併用되고 있다. 그리고 集團能率의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에 대해 보면 이미 말한바와 같이 漁業活動은 集團勞動形態를 取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船內共同生活形態를 集列型共同體의 性格이라 規定된 바 있었다.

이러한 勞動存在樣式에 있어서 漁船員의 私的 利益을 極大化시키기 위한 努力의 前提이며 必須的인 것이 集團能率給의 制度的 裝置이다. 여기에선 一次的으로 集團賃金으로 짓가림制의 船員側 分配分이 確定된 後에 二次的으로 漁船員間에 짓分配方式에 의한 個別賃金이 確定되는 方式을 取하고 있다. 짓分配方式은 集團 成果에 대한 相對的 貢獻度에 의한 方式이기 때문에 바로 漁船員 個個人의 Egoism의 相互依支的 關係를 集團成果와 더불어 私的 利益을 極大化시키는 方式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集團成果의 向上없이 私的 利益의 增進은 없기 때문에 團體交渉의 主內容인 勤勞條件도 集團을 媒介로 漁船員個人에게 그 利益이 傳達되도록 集團單位로 改善되고 向上되지 않을 수 없다.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이 窮極的으로 漁船員의 欲求充足을 意圖하는 것이고 모든 欲求가 金錢動機(money motive)와 關聯性을 맺고 있기 때문에¹⁰⁾ 集團能率給制度에 의해 集約的으로 表現

10) Paul Hersey & Ken Blanchard ;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ur, 4th ed., 1982, Prentice-Hall.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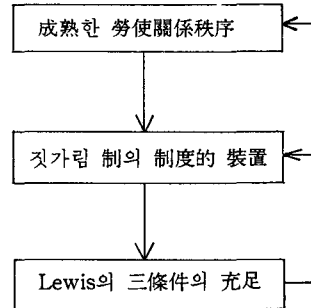
되는 것이라 理解된다. 여기에 깃가림制賃金制度가 漁業經營에 있어서 當爲性있는 賃金制度로 認識되지 않을 수 없다.

以上에서 漁業勞使關係構造를 效果的으로 支持하는 制度로서 깃가림制가 規範的으로 必的인 制度로 浮刻된다. 그리고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團體協約書「船員의 義務」條項에서「船員은 船主 또는 船長의 正當한 指示에 違背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第15條1項)는 規定과「船員은 船內秩序를 自律的으로 維持하며 生産性 增強에 努力한다」(第15條4項)는 規定에 의해 從的 秩序와 橫的 結束의 強化에 의한 共同體的 혹은 即目的 信賴關係의 規範性을 明文化시키고 있으며 또한 就業規則에 깃가림制의 導入에 의해 漁業經營體의 存續·繁榮과 團體的 勤勞條件의 改善·向上을 漁業勞使關係制度로서의 確立을 企圖하고 있다. 그리고 大型旋網漁業에 있어서는 깃가림制 代身에「生産手當」制를 導入하고 있으나 大型旋網漁業의「生産手當」制는 固定給制併用·都中經費非控除깃가림制의 變形으로 깃가림制에 있어서의 勞使分配率 代身 生産量에 一定率을 곱한 額을 勞側分配額으로 하고 이 勞側分配額은 船員間에 分配토록 하는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大型旋網漁業에서 採擇하고 있는 制度는 마치 The Scanlon Plan, Profit Sharing, The Rucker Plan 등과 同一한 集團能率給制度인 것으로 理解되기 쉬우나, ① 大型旋網漁業의 固定給이 職務評價나 時間研究에 基盤을 둔 職務給이 아닌 生活給으로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의 最低保障額과 本質을 같이 하고 있으며 ②「生産手當」의 產出基礎가 事前에 確定된 能率單位當價値가 아닌 生産物의 販賣價이고 ③ 一般勤勞者와 달리 漁船員이 賃金源資인 生産物(魚類)을 스스로 發見해야 한다는 點에서 깃가림制의 變形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漁業勞使關係가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깃가림制에 의해 支持되고 있다고 할 때 깃가림制가 能率給 내지 成果給의 本質을 具備하고 있는 만큼 能率給制度가 充足시켜야 할 條件이 滿足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Slater Lewis의 ① 時間制勞動의 平均的 業績에 基礎한 最低基準의 報酬 ② 勤勞者가 一定한 任意的 段階까지만이 아니고 無限히 改善할 수 있도록 無條件의이고 充分한 Incentive를 賦與할 것 ③ 雇傭者와 被傭者의 雙方이 이 改善에 의한 利益에 參與할 것, 즉 繼續的인 操作技能의 增進과 生産方法에 있어서 一連의 작은 改善에 의해 初期의 段階뿐 아니라 生産量의 增大와 그 結果 個當原價의 引下가 이루어 지는 最後段階에 까지 雙方이 利益에 參與할 것 등 三條件을 提示하고 있다. 이 Lewis의 三條件을 漁業環境과 깃가림制에 適應시킬 때 第一條件은 最低保障給制 즉 所謂 固定給制를 導入하여 最低生活이 保障될 것, 第二條件은 勞側分配이 充分한 Incentive의 作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第三條件은 勞使雙方이 모두 깃가림制에 의한 利益을 恒常 享有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Lewis의 條件에 대한 새로운 理解는 깃가림制가 漁船員으로 하여금 經營 내지 組織에 繼續的인 Commitment를 可能케 하고 깃가림制의 集團能率給制度의 技能이 繼續的으로 保障되기 위한 充分條件이 되기 위한데 緣由한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같이 即自的 信賴關係를 勞使兩側의 持續的 存續·發展을 위한 成熟한 勞使關係秩序의 確立, 이를 可能케 하는 깃가림制의 制度裝置에 의한 勞使關係秩序의 維持基盤確立 다

음으로 깃가림제가 集團能率機能의 繼續的 保障을 위한 Lewis 三條件의 充足에 의해 밑에 圖示하는 바와 같이 階層的이고 還流的(feed back)인 關係에 의한 漁業勞使關係秩序가 自由經濟體制下에서 體制維持機構인 企業, 즉 漁業經濟體의 維持發展 그리고 漁業經營體의 積極的 構成要素인 漁船員의 維持·地位向上을 위해 規範的으로 確立됨을 必要로 한다.



V. 結 論

漁業勞使關係를 理解함에 있어서 이것 역시 自由經濟體制의 確立·發展過程에 나타난 社會的 現象이나 漁業이라는 特殊한 產業環境에서 나타난 現象이란 觀點에서 그 特殊性을 把握하고자 하였으며, 우선 「人間疎外」에서 考察을 試圖 하였다. 그래서 人間疎外의 諸類型에 따라 漁業에서 어떤 樣相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았다. 이 考察에서 漁業經營은 그 職能의 分化和 專門化가 進展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그 勞動은 集團勞動形態로 集列型共同體의 性格을 띠고, 勞動의 成果는 賃金에 直線的으로 連結된다는 點에서, 漁業에 있어서의 「人間疎外」는 大體로 크게 進化되지 않은 狀態에 있음을 指摘하였다. 다음으로 勞使關係는 「使」와 「勞」의 兩者間에 形成되는 社會的 關係라는 觀點에서 漁業勞使關係가 어떻게 現象化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는 勞使關係가 社會的 問題로서 나타나는 것은 勤勞者의 人間化努力의 表現이며 自由經濟體制의 持續·發展을 위한 摸索過程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永續的 關係로서 漁業勞使關係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制度的 裝置로서 現在 漁業經營에서 普遍的으로 利用되고 있는 깃가림制와 이 깃가림制가 充足시켜야 할 條件을 Lewis에 의거하여 提示하였다. 이는 깃가림制는 單純한 賃金形態가 아니고 歷史的으로 確立된 漁業經營形態이며, 이 制度的 規範的 維持와 이의 改善에 따라 漁業經營에 있어서의 「使」와 「勞」의 調和가 形成되는 것이야 말로 「漁業」이라는 產業的 特性에 適合한 勞使關係秩序의 確立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漁業一般을 생각함에 있어서 大型機船底引網漁業과 大型旋網漁業을 充分히 深度있게 分析을 꾀하지 않고 다만 이데알(ideal)한 漁業經營形態라 想定하고 이 바탕위에 漁業勞使關係를 吟味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試圖은 漁業勞使關係를 어떤 Vision에 洞察하는 것이 그 本質을 잘 理解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